

서울고등법원 2021. 7. 8 선고 2020나204957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

담당변호사 정우근

피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산

담당변호사 사형환

변 론 종 결 2021. 6. 17.

판 결 선 고 2021. 7. 8.

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. 12. 17. 선고 2019가합58278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B 사이에 2019. 5. 17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

350,741,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50,741,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

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바,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아래 2.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

○ 제1심 판결 제6면 제6행의 ‘주식회사 L(이하 ’L’이라 한다)’을 ‘주식회사 M(이하 ’M’이라 한다)’으로 고치고, 이후 ‘L’으로 기재된 부분을 모두 ‘M’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 제11면 제11행의 ‘1,165,585,140원’을 ‘1,165,558,140원’으로, 제12행의 ‘137,762,692원’을 ‘137,726,692원’으로 각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 제18면 ⑤항의 하단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⑥ 피고는 B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채무와 M에 대한 채무,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 해결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을 뿐, B의 다른 채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,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.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에 B이 발행한 약속어음(94,244,000원 및 315,523,000원)이 지급거절 된 상태였고, 피고와 B 사이의 거래 관계나 거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, 피고로서는 당시 B의 재정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.』

3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남성민, 판사 원종찬, 판사 이해란

(별지)

목 록

1. 파주시 Z 대 614.5㎡

2. 파주시 Z

[도로명주소] 파주시 AA

위 지상 경량철골구조

피브이씨패널강화유리지붕

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

1층 454.6㎡

2층 184.7㎡. 끝.

